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현수

변론 종결 2024. 10. 17.

판결 선고 2024. 10. 3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6. 12. 접수 제1381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C은 D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2. 4. 3. 접수 제68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D는 E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71. 10. 29. 접수 제140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E의 소유인데, 망 D는 형의 건강이 좋지 않고 조카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임야대장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기회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71. 10. 29. 접수 제40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이후 망 D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망 C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2. 4. 3. 접수 제6807호로, 망 C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6. 12. 접수 제1381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결국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 C에게, 망 C은 망 D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망 D는 망 E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E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망 E로부터의 상속을 주장하고 있고,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E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정도로 망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

별지